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2가합5269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이용인

피고(선정당사자)B

변론 종결 2023. 3. 10.

판결 선고 2023. 3. 31.

주 문

1. 망 C(D생)과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2020. 12. 24. 체결된 4,100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선정자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망 C와 선정자 E 사이의 별지 1 기재 금전에 대한 증여와 망 C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의 별지 2 기재 금전에 대한 증여를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선정자 E는 486,845,080원, 피고(선정당사자)는

92,321,0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22. 1. 5.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친이고, 선정자 E는 망인의 배우자이다(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

나. 원고의 투자금 지급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1)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30.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65,000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020. 12. 23.경까지 망인 등의 계좌로 39회에 걸쳐 합계 2,150,215,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투자금'이라 한다).

1	2015. 6. 30.	100,065,000
2	2015. 8. 20.	110,000,000
3	2015. 9. 16.	50,550,000
4	2015. 9. 23.	95,000,000
5	2015. 9. 24.	5,000,000
6	2015. 10. 16.	2,000,000
7	2015. 11. 16.	70,000,000
8	2015. 12. 1.	10,000,000
9	2015. 12. 2.	300,000
10	2016. 2. 19.	100,000,000
11	2016. 2. 21.	100,000,000
12	2016. 2. 22.	70,000,000
13	2016. 3. 16.	30,000,000
14	2016. 4. 11.	100,000,000

1	2015. 6. 30.	100,065,000
15	2016. 4. 12.	270,000,000
16	2016. 6. 24.	30,000,000
17	2016. 11. 8.	30,000,000
18	2016. 12. 28.	50,000,000
19	2017. 6. 12.	100,000,000
20	2017. 7. 15.	20,000,000
21	2017. 11. 30.	20,000,000
22	2018. 3. 22.	20,000,000
23	2018. 8. 21.	27,000,000
24	2018. 9. 12.	166,000,000
25	2018. 9. 14.	82,000,000
26	2018. 11. 26.	120,000,000
27	2019. 1. 18.	25,000,000
28	2019. 4. 3.	18,000,000
29	2019. 12. 9.	40,000,000
30	2020. 1. 27.	20,000,000
31	2020. 5. 22.	50,000,000
32	2020. 5. 25.	9,000,000
33	2020. 9. 17.	9,000,000
34	2020. 9. 23.	600,000
35	2020. 10. 24.	50,000,000
36	2020. 10. 26.	50,000,000
37	2020. 10. 27.	50,000,000
38	2020. 10. 28.	50,000,000
39	2020. 12. 23.	700,000
합계	2,150,215,000	

2) 그런데 망인이 투자 당시 약정한 이자 내지 수익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와 망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2. 1.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채무자 C은 채권자 A로부터 위 금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다.

차용 금원 : 일금 일십구억 원정 (₩1,900,000,000)

제1조 [대여일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20. 2. 1. 금원을 차용하며 채권자는 이 금액을 즉시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하나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주명 : C]

제2조 [변제기일 및 변제장소]

채무자는 위 금원의 차용금 원금을 아래 일정에 따라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지급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하나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주명 : A]

1회차 : 2021. 10. 15. 일금 사억삼천만 원정(₩430,000,000)

2회차 : 2022. 04. 05. 일금 삼억 원정(₩300,000,000)

3회차 : 2022. 12. 31. 일금 일십일억칠천만 원정(₩1,170,000,000)

제3조 [이자지급등]

위 차용금의 이자는 연 2.84%로 하고 지급은 매월 13일 채권자의 주소에서 지급 또는 채권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만일 3회 이상의 이자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위 차용 금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하나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주명 : A]

제4조 [지연손해금]

위 차용금을 위 2조의 이행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채무자는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연 5.0%의 비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는 채무자가 위 차용 원금을 지급받았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에 갈음한다.

제5조 [특약사항]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본계약은 계약일 이전까지 차용 금액을 2020. 2. 1.부로 갱신하는 계약으로 한다.
2. 최초 계약 이후 원금 납부일을 경과한 지체 지연금을 합한 금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설정한다.
3.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기 설정한 원금 상환 일정보다 미리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 상환수수료는 해당사항 없으며 이자 금액은 잔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본 계약은 2022. 12. 31. 원금 상환 완료 이후 추가적인 갱신을 하지 않는다.

계약일자 2020년 2월 1.일

3) 이후로도 망인과 원고는 채무자를 망인, 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2021. 1. 1. 차용금 300,000,000원, 변제일 2021. 12. 31. 이자 연 3.2%, 지연손해금 연 5.0%로 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2021. 6. 16. 차용금 200,000,000원, 변제일 2021. 8. 13. 이자 연 3.2%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이하 위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의 상환 요구 및 망인의 출국, 사망 등

원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각 투자금의 반환 내지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차용금 등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망인은 2021. 9.경 외국으로 출국하였다.

원고는 2022. 1. 18.경 서울강남경찰서에 망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투자금 및 현금 103,000,000원을 합한 2,253,2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망인이 2022. 1. 5. 캐나다에서 사망한 것이 밝혀져 조사가 종결되었다.

라.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송금

망인은 별지 1, 2 기재와 같이, 2017. 5. 15.부터 2021. 9. 17.까지 53차례에 걸쳐 선정자 E에게 합계 486,845,080원을 송금하였고, 2018. 5. 23.부터 2021. 12. 17.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92,321,075원을 송금하였다(이하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송금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이라 하고, 위 각 송금행위를 구분하여 지칭할 경우에는 별지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제○ 송금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2, 14,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투자금과 G 등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선정자 E는 별지 1 제1 내지 53 송금행위에 따른 송금액 합계 486,845,080원, 피고 B은 별지 2 제1 내지 5 송금행위에 따른 송금액 합계 92,321,07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망인이 배우자였던 선정자 E와 부친인 피고 B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이거나 망인이 피고 B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있기 전인 2015. 6. 30.부터 원고로부터 망인 등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돈이 송금되었고 그 송금액도 최초 송금일인 2017. 5. 15. 기준으로 이미 1,222,915,000원에 달하는 사실,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원고로부터 망인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이 송금된 사실, 2020. 2. 1. 이후로는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차용금 채권이 존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때 사해행위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면 족하고 별도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투자금 반환 채권 내지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해당 행위의 적정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33086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때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57 판결 참조).

2) 망인의 선정자 E에 대한 별지 1 기재 송금행위에 관하여 망인이 선정자 E에게 별지 1 기재 송금행위를 통하여 2017. 5. 15.부터 2021. 9. 17.까지 53차례에 걸쳐 합계 486,845,08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송금행위로 지급된 각 금전은 망인이 선정자 E에게 가족을 위한 생활비, 교육비 등 명목으로 송금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과 선정자 E 사이에 위 금전을 선정자 E에게 무상으로 공여하여 이를 중국적으로 귀속시키려 데에 의사의 합치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망인이 별지 1 기재 각 송금행위 당시 배우자였던 선정자 E에게 위 각 금전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각 송금행위로 지급된 위 각 돈이 선정자 E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② 망인은 부부간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 친권자의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직계혈족간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에 따라 자녀들에게 학비, 생활비 등을, 배우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정자 E에게 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는 비록 이로써 망인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양의무의 취지에 반하여 적정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고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의무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로 한정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등 참조).

③ 망인과 배우자 E 사이에는 2명의 자녀(H I생 및 J K생)가 있었고, 선정자 E는 직장에서 퇴사하여 당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자녀들의 교육 및 양육을 도맡아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망인이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기간 전인 2016년, 2017년 5월까지도 망인은 정기적으로 선정자 E에게 매달 약 3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은 2017. 5. 15.부터 2018. 5. 16.까지는 월 평균 약 300만 원을¹⁾, 2018. 7. 13.부터는 월 평균 약 500만 원²⁾을, 2019. 5. 15.부터는 월 평균 약 600만 원³⁾을 선정자 E에게 주기적으로 송금하였다. 이러한 송금내역은 종전에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간격, 금액과 급격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순차적으로 송금액이 증가하였긴 하나 자녀의 성장이나 물가 상승에 따라 요구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송금내역 중 상당수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생활비의 지급이 부양의무의 취지에 반하여 적정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위 각 금전 외에도 망인과 선정자 E 사이에 별도의 금전거래 또는 일상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송금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망인이 선정자 E에게 송금한 내역들 중에는 위 ③에서 본 바와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된 생활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송금한 생활비 외에도 부양의무와 관련된 추가적·비정기적인 자금의 필요,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등을 위한 이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선정자 E로부터 망인에게 2017. 9. 28. 3,000만 원, 2019. 7. 11. 580만 원, 2019. 12. 10. 480만 원이 각 송금되기도 한 점, 일부 자금은 망인으로부터 선정자 E에게 이체되었다가 곧바로 망인의 계좌 등으로 다시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선정자 E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필요에 의해 선정자의 계좌를 일시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송금행위를 두고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망인의 2019. 11. 7. 및 2019. 11. 19. 이후의 금전 송금(제43, 45 내지 53 송금행위)은 이전과는 달리 송금 간격이 정기적이라 보기 어렵고, 1회 송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선정자 E와 두 자녀는 2019년 말경 캐나다로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자녀의 학비 등으로 2020년도에 32,600 캐나다 달러, 2021년도에 33,300 캐나다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보이고,⁴⁾ 망인으로부터 1회에 5,000만 원 가량이 지급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전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생활비를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21. 11. 16. 선정자 E로부터 망인에게 4,800만

원이 송금되기도 한 점, 나아가 망인은 2021. 9.경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시기에 이루어진 송금행위가 이러한 해외출국을 앞두고 급작스럽게 재산의 은닉 등을 위해 큰 금액을 일시에 송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송금행위에 따른 금전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생활비의 지급이 부양의무의 취지에 반하여 적정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망인의 피고 B에 대한 별지 2 기재 송금행위에 관하여 가) 망인이 피고 B에게 별지 2 기재 송금행위를 통하여 2018. 5. 23.부터 2021. 12. 17.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92,321,075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3, 15, 16, 17, 19 내지 21,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별지 2 제1, 2, 4, 5 송금행위는 망인이 피고 B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송금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과 피고 B 사이에 위 각 금전을 피고 B에게 무상으로 공여하여 이를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직계혈족간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에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무도 포함되는데 위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비록 금전 지급으로 인하여 망인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양의무의 취지에 반하여 적정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고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한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도 이러한 점을 일부 고려하여 소장에서 사해행위로 주장하였던 송금행위 중 망인으로부터 매월 피고 B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100만 원 등을 2022.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취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② 별지 2 제1, 2, 4, 5 송금행위는 망인이 피고 B에게 송금한 내역들 중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된 생활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2021. 8. 31. 마지막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생활비 명목의 월 100만 원 지급을 하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 B은 고령(L생)으로 정기적인 수입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은 없던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5) 정기적으로

송금한 생활비 외에도 부양의무와 관련된 추가적·비정기적인 자금의 필요 등을 위한 이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 B으로부터 망인에게 2019. 4. 15. 800만 원, 2019. 5. 1. 1,000만 원 및 2019. 12. 24. 690만 원이 각 송금되기도 하였다(그중 2019. 4. 15. 및 2019. 5. 1.은 망인이 피고 B 명의의 보험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갔다고 주장하는 일자와 같은 날이고, 송금액도 각 대출액인 900만 원과 유사하다).

③ 별지 2 제4 송금행위의 경우 비록 망인의 해외로 출국한 후 2021. 11. 4.경 일시에 상당한 금액(3,200만 원)이 송금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 B이 2021. 11. 10.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400만 원(계약시 지급) 및 잔금 3,600만 원의 지급일(2021. 11. 20.)과 근접한 것으로 보이고 송금액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바, 직계존속의 주거비 지원⁶⁾도 부양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비슷한 시기에 M로부터 피고 B에게 4,000만 원이 송금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 송금의 목적이나 위 금전의 사용처 등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자금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다만 망인의 2020. 12. 24.자 제3 송금행위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송금일 전후로도 망인으로부터 피고 B에게 매월 100만 원의 정기적인 생활비가 지급되고 있었고 일시에 비교적 큰 금액(4,100만 원)이 송금되었음에도 위 돈이 송금된 이유나 사용처 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6. 7. 망인에게 107,102,607원을 인출하여 주고, 자신의 급여도 모두 망인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는 등 망인에게 관리를 위해 맡겨놓은 돈을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이 제출한 자료(을 제13호증)는 2014. 6. 17. 당시 본인의 시티은행 계좌에 107,102,607원의 잔고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을 보여줄 뿐 위 돈이 망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하기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위 시점에 망인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투자금 반환 채무 내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 등으로 적어도 19억 원 이상의 소극재산이 존재하였던 반면 예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⁷⁾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에게 2020. 12. 24. 4,100만 원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전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 B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명책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며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사해의사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 B이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소결론

별지 1, 2 기재 송금행위 중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망인이 다른 원인이나 대가 없이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과 피고 B 사이에 2020. 12. 24. 체결된 4,100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선정자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명철

판사김혜림

판사노해준

별지

1) 별지 1 기재 각 송금행위 중 제1,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송금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위 각 송금행위의 송금일은 2017. 5. 15., 2017. 6. 13., 2017. 7. 17., 2017. 8. 13., 2017. 9. 13., 2017. 10. 13., 2017. 11. 16., 2017. 12. 13., 2018. 1. 16., 2018. 2. 16., 2018. 3. 17., 2018. 4. 17., 2018. 5. 16., 2018. 5. 22.(2018. 6.경에는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별도의 송금행위가 없는바, 위 일자에 2018. 6. 생활비를 선급한 것으로 보인다)이다.

2) 별지 1 기재 각 송금행위 중 제20, 21, 24, 25, 26, 28, 29, 31, 33, 35 송금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위 각 송금행위의 송금일은 2018. 7. 13., 2018. 8. 14., 2018. 9. 21., 2018. 10. 15., 2018. 11. 15., 2018. 12. 16., 2019. 1. 20., 2019. 2. 15., 2019. 3. 15., 2019. 4. 15.이다.

3) 별지 1 기재 각 송금행위 중 제36, 37, 38, 39, 41, 42, 44 송금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위 각 송금행위의 송금일은 2019. 5. 15., 2019. 6. 14., 2019. 7. 15., 2019. 8. 15., 2019. 9. 15., 2019. 10. 15., 2019. 11. 15.이다(다만 제42 송금행위는 5,000,000원, 1,000,000원 및 3,000,000원으로 이루어졌는바, 그중 6,000,000원 부분만을 의미한다).

4) 당시 환율을 고려하면 이는 한화 약 6천만 원에 해당한다.

5) 이는 망인의 모친인 N(O생)도 마찬가지이다

6) 피고 B은 현재도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이에 대하여는 피고들도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